

『大東文化研究』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1조(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大東文化研究院(이하, ‘연구원’이라 칭한다)이 간행하는 학술지 『大東文化研究』(이하, ‘학술지’라 칭한다)에 게재되는 학술논문의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

2조(표절)

- 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성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성과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연구 성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다.
- 나.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논문이나 저술에서 많은 부분의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것은 표절이다.
- 다.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 논문이나 저술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자기표절이다.

3조(저자표시)

- 가.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나. 저자의 표시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하고, 예우차원으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가 될 수 없다. 반면, 연구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4조(연구물의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할 수 없다.

5조(인용 및 참고 표시)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조(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

7조(책임범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8조(공평한 취급)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9조(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

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10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대상 논문의 저자 및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3절 심사위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

11조(성실한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심사의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12조(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13조(저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14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장 윤리규정의 시행

15조(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검증)

가. 심사 중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표절 여부 및 징계 내용의 확정을 담당한다.

나.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 혹은 심사 과정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여 처리한다.

16조(윤리위원회의 구성)

가.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이 겸임하고,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나. 윤리위원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는 윤리위원회에서 제외한다.

17조(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한다.

18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19조(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조(피조사자 보호) 피조사자는 윤리규정 위반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1조(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내용)

가. 투고된 논문의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해당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나. 게재된 논문의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해당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소급하여 취소하고, 인터넷 서비스에서도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윤리규정 위반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와 연구원 홈페이지에 윤리규정 위반사실을 공지한다.

다. 해당 연구자는 향후 5년간 연구원의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4장 보칙

22조(윤리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23조(효력) 이 규정의 효력은 이 규정을 제정한 2007년 4월 12일부터 발생한다.